

#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총무위원회(2005. 3. 24)

## 1. 심사경과

가. 2005. 3. 17 : 사천시장제출

나. 2005. 3. 18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14호)

다. 2005. 3. 24 :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 
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환경보호과장 신태영)

### 가. 제안이유

1회용품 신고포상금 1인당 지급제한 강화,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하향조정, 신고포상금 현물 지급 허용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함
- 2)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
- 3)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 강화
  - 연 100만원 → 연 50만원(지급한도액 산정은 전국 기준)

### 다. 관계법령
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문필상)

일부개정조례(안)은 2004. 1. 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하향조정, 신고포상금의 현금이외의 지역 상품권 등 현물지급도 가능하도록 하고, 1인당 신고포상금을 년100만원에서 50만원(전국을 기준)으로 지급제한하는 일부 개정조례(안)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,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### 5. 토론 요지 : 없음

### 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### 7. 소수 의견 : 없음